

가.1 공사의 개요

가 1.1 공사 개요서

공 사 명		성동리 72-3번지 외 2필지 0907스튜디오 신축공사					
현장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2-3번지 외 2필지	전 화 번 호	010-8981-2911			
공 사 기 간		2026.03.30. ~ 26.10.30.	공 사 금 액	₩1,496,000,000 (V.A.T 포함)			
시 공 자	회 사 명	수영종합건설주식회사	전 화 번 호	031-957-4334			
	대 표 자	김 선 영, 정 구 영					
	현장소장	오 대 식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검산로 519번길 46-42 (축현리)					
발 주 자	회 사 명	0907크리에이티브	전 화 번 호	010-8944-6377			
	대 표 자	최 동 숙 외 1인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새오리로 59-28					
설 계 자	회 사 명	건축사사무소 그리다	전 화 번 호	031-957-1171			
	대 표 자	이 흥 규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44, 201호					
감 리 자	회 사 명	노가건축사사무소	전 화 번 호	010-3747-2703			
	대 표 자	노 준 래					
	주 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43, 2층					
공 사 개 요	대 상 공 사	구 조	개 소	굴착깊이(m)	최고높이(m)	연면적(m ²)	
	제2종근린생활 시설(사진관)	철근콘크리트	1개동, 지상2층	0.9	8	499.25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기 타 특 수 구조물 개요							
주 요 공 법		• 기초지반공사(터파기)					
		지하안전영향평가					X
		굴토(구조)심의 실시					X
		설계안전성검토(DFS)					X
		취약공종					X

가.2 위치도

가 2.1 현장 위치도 및 현황도

1) 현장 위치도



가.3 전체 공정표

가 3.1 공정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성동리 72-3번지외 2필지 0907스튜디오 증축공사							착공후 : 210일		
구분	공정	일수	30	60	90	120	150	180	210
0907 스튜디오 증축공사 2층	철거공사		■						
	가설공사		■	■					
	토공및배수공사		■	■				■	■
	폴리본크리트공사			■	■	■			
	타일및조적, 물공사					■	■	■	
	미장및방수공사								
	항호,유리공사						■	■	
	지붕및환풍공사							■	■
	기계설비공사				■	■	■	■	
	전기통신공사				■	■	■	■	
	소방공사				■	■	■	■	
	폐기물처리공사								■
	현장정리및철소								

다 3.3 정기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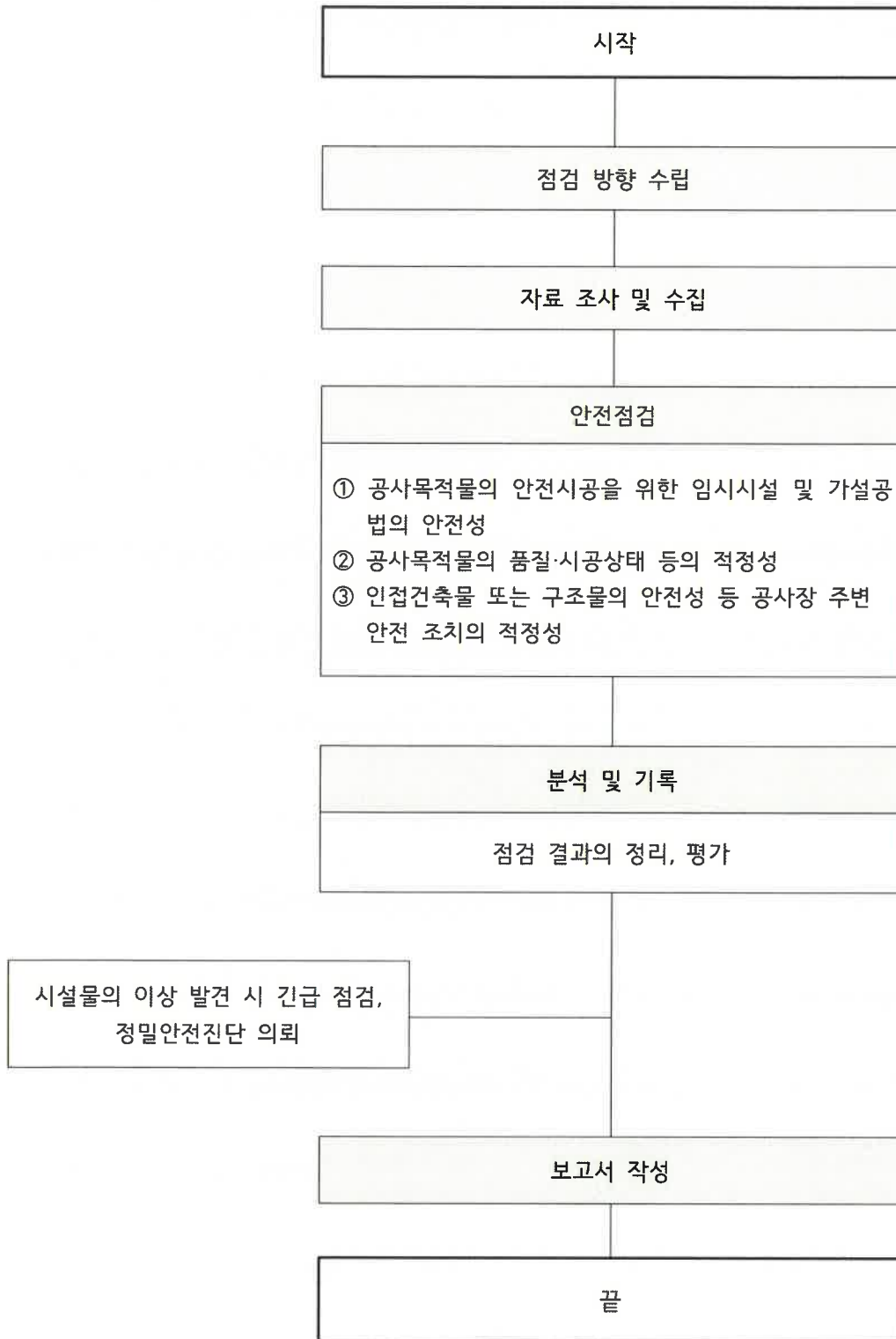
1) 정기안전점검 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과업의 목적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특법」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무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업 대상	-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사용 공사

2) 과업의 범위

구 분	수행계획	내용	비고
기초자료 수집.분석	설계도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계도서 등 구조물 관련 자료 수집 실시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보고서, 시공도면 등 시공 자료 검토 작업계획 및 과업 분할 	
현장조사	시공상태 조사 및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육안 점검
	내구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 부재 비파괴 시험 - 반발경도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 - 전자기를 이용한 철근탐사 	해당 비파괴 시험 장비 사용
현장조사	현장조사 자료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상태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점검 손상결함 상태 및 부재 평가 내구성 조사 결과에 따른 내구성 평가 	상태평가
	보수 및 보강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상 및 결함 발생 시 구조물 특성에 맞는 보수.보강 대책 수립 및 제시 	필요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공상태의 적정성 평가 부재별 내구성 평가 종합결론 	-
수행배경	정기안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기술진흥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목적물의 안전 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수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지침에 의거하여 점검수행 	
과업수행 적용기준	구 분	대상시설물	
	1	건설산업진흥법 (국토교통부)	
	2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3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 (국토교통부)	
	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935호의 건설공사안전관리지침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6	도로교 설계기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정기안전 점검 기본계획 FLOW CHART



4)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 및 시행시기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 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흩살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 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폐기물 매립시설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 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도로.철도. 항만 또는 건축 물 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공사 종 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건설 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항타 및 항발기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시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가설 구조물 (시행령제1 01조외2)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을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 단계시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 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